\* 표시의 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므로,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의 주민이 이용하게 됩니다

## ■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

개호보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노인홈 등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. 또, 시설 외 의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외부서비스 이용형 특정 시설 / 도 있습니다.



## ■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\*

개호보험 사업자 지정을 받은 정원 30명 미만의 소규모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노인홈 등 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. 또,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의 입주자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되며 (개호전용형 특정시설),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요 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 한정됩니다.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

## 1 개월당 이용자 부담의 기준

( 단위: 엔 /30 일)

시설 종별 등		이용자 부담 단계	개호서비스비 (10% 부담의 경우)	식비	거주비	합계
개호노 인복지시설 (특별양호노 인홈)	유닛형 독실	제 1 단계	15,000	9,000	24,600	48,600
		제 2 단계	15,000	11,700	24,600	51,300
		제 3 단계	24,600	19,500	39,300	83,400
		제 4 단계	25,900 ~ 30,400	_	_	_
	공동실 (합숙실)	제 1 단계	15,000	9,000	0	24,000
		제 2 단계	15,000	11,700	11,100	37,800
		제 3 단계	24,600	19,500	11,100	55,200
		제 4 단계	23,300 ~ 27,700	_	_	_
개호노 인보건시설 (기본형)	공동실 (합숙실)	제 1 단계	15,000	9,000	0	24,000
		제 2 단계	15,000	11,700	11,100	37,800
		제 3 단계	24,600	19,500	11,100	55,200
		제 4 단계	29,400 ~ 32,800	_	_	_

<sup>1:</sup> 표의「이용자 부담 단계」는 보험료 소득 단계와는 다릅니다 . 2: 제 1~3 단계의 식비·거주비는 국가가 정한 부담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한「보충급부」및 11 페이지의「고액개호서비스 비」적용 후의 금액으로 이용자 부담의 상한액이 됩니다 ( 제 3 단계의 식비 부담한도액은 2021 년 8 월부터 일부 바뀝 니다).

니다). 주 3: 「개호서비스비」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(위의 표는 특별구의 경우). 주 4; 이용자 부담 단계가 제 4 단계인 분의 식비·거주비는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 주 5: 위의 표 외에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요양식이 가산되거나 인지증(치매) 전문케어 가산 등이 가 산됩니다. 또, 칫솔이나 화장품 등의 일용품과 독감예방접종, 기호품 등도 자기부담이 되며, 모 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